

‘26. 7.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 정 지 원 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2026-50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및 중기부 옴부즈만 개선권고를 반영하고, 김제시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의 변경
 - (현행)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개정)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승인 및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위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방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위탁계약 체결, 수탁기관 의무,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8조)
- 운영지원,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0조)
- 재계약, 사무편람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2조)
- 관리·감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제24조)
-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 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
- 다른 조례의 개정 (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여
-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여
- 마.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부
- 바.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자. 입법예고기간 : 2026. 6. 2. ~ 6. 22.(21일간)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 없음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7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아.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개선 권고 공문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발췌
- 개선권고 관련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정비 대상

자. 현행 조례

차. 방침결정문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김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

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 위탁을 한다.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4. 그 밖의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위탁사무별 업무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기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의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3. 민간위탁의 목적, 필요성, 위탁 기간 및 조건

4.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5. 민간위탁의 보조 및 지원예산

6. 민간위탁의 추진방법 및 일정

7.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8. 그 밖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대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6.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결과 공개)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시장이 요구한 제출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업무소관 부서에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을 따르며, 김제시 소속 관계 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

다.

1. 김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교)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문서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

⑤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해야 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목적

3.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사업비·수수료·사용료 등 비용 관리 및 사용 실적

5. 수탁기관의 의무

6.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7. 지도·점검,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계약기간, 위탁사무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제외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

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 위탁받은 시설 증·개축 또는 추가 시설 신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1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계약은 1회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지도·점검 등과 시정조치 결과,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거나 그 관리·감독에 필요한 문서,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처리상황의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등의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

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김제시가 행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수탁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제시 대울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김제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김제시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

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김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김제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⑯ 「김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⑰ 「김제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⑱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⑲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⑳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㉑ 「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㉒ 「김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㉓ 「김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㉔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㉕ 「김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㉖ 「김제시 농·특산품홍보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㉓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5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㉔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㉕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㉖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㉗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김제시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김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㉔ 「김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㉕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㉖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㉗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㉘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㉙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5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④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⑤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⑥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⑦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⑧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

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

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아리랑 문학마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민간위탁 사업별 위탁사무에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발생 예상

안 제17조(운영지원 등)

-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액이 소관부서 위탁사무별 성격에 따라 계산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4. 작성자 : 인사팀장 윤재승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8. 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694

제 목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보고

행정지원과-14829(2026.6.9.) 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회기간: 2026. 6. 9. ~ 6. 17. (9일간)
2. 조회방법: 공문발송
3. 조회내용: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의견 수렴
4. 조회결과: 의견없음. 끝.

2026. 6. 18.

김 제 시 장

귀하

주무관

박현규

인사팀장

윤재홍

행정지원과장

강해남

협조자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보고

행정지원과-13964(2026.06.01.)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6. 1. ~ 6. 22.(21일간)
2. 대상조례 :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의견수렴
5. 예고결과 : 의견없음. 끝.

주무관	박현규	인사팀장	윤지승	행정지원과장	강태남	전결 2026. 6. 23.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6037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2층 행정지원과 (서암동, 김제시청)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276	팩스번호	063-540-3383	/ hyunyuuuuu@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희도시 김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8621(2026.6.26.)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26. 6. 25.(목) 09:2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10명
4. 심의안건 : 총 8건(조례 7,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8건

연번	심의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8건 (조례 7, 규칙 1)				
1	2026-29	행정지원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30	세 정 과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31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2026-32	교육가족과	김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2026-33	스마트유통과	김제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6	2026-34	기술보급과	김제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7	2026-35		김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8	2026-36	수도사업소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교육가족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스마트유통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기술보급과장), 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현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전결 2026. 6. 29.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8673

접수

무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kirus@korea.kr

/ 무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희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 법령 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 8. 6.>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2026. 2. 19.>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6. 2. 19.>

⑤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ombudsman”으로 본다. <개정 2013. 8. 6.>

⑥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22. 1. 4.>

⑦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22. 1. 4.>

⑧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 8. 6., 2017. 7. 26.>

⑨ 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본조신설 2008. 12. 26.]

[제목개정 2013. 8. 6.]

□ 관련 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개선 권고 공문 및 주요내용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자치법규(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선 수용과제 이행현황 재점검 협조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57(2026. 1. 7.)호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제개선 건의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에 기 점검한 규제개선 수용과제의 이행현황을 재점검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 및 시군은 이행점검표(붙임1)를 작성하시어 '26. 1. 21.(수)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개정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의견 필수

붙임 1. 민간위탁 기본조례 규제개선 이행점검표 1부

2. (참고)2023년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선의견 회신문 1부. 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수신자 정책기획관, 군산시장(기획예산과장), 익산시장(기획예산과장), 정읍시장(기획예산실장), 남원시장(감사담당관), 김제시장(기획감사실장), 진안군수(기획홍보실장), 무주군수(기획조정실장), 순창군수(기획예산실장), 고창군수(기획예산실장), 부안군수(기획감사담당관)

주무관	장언재	규제혁신팀장	류재욱	자치제도과장	전광 2026. 1. 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치제도과-135	(2026. 1. 8.)	접수	기획감사실-345	(2026. 1. 8.)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효자동3가)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4143	팩스번호	063-290-6800	/ jyj0623@korea.kr	/ 대국민 공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권고 주요내용

연번	건의 주요내용	해당 조문	마련 여부
	4개	4개	
1	01.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 및 선정기준 사전공개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여
2	02.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근거규정 마련	안 제10조제5항	여
3	07. 수탁자의 제3자 위탁 허용 명확화	안 제17조제5항	여
4	19.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 근거 마련	안 제14조	여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발췌**

12.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평가대상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이해충돌 가능성**

□ **문 제 점 :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자격 및 심의회 구성 등이 중요함에도

- 경북 경산시 등은 외부 위촉위원에 대한 구성 비율이 없거나 낮고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심의과정에 공정성·객관성 훼손 우려
- 전남 장흥군 등은 위원 자격요건이 없거나 불명확해 지명권자의 의사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될 우려

□ **개선방안**

- 전남 장흥군 등은 외부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타 기관 우수사례]**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 <삭제 2023.7.10.>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관계공무원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참고자료 : 개선권고 관련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정비 대상

[표 12] 민간위탁 관련 규정 현황

구 분	①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②수탁기관 감사 의무화
	외부위원 비율 (과반수 이상)	자격요건 구체화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미흡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미흡 (안 제12조제1항)	미흡 (안 제12조제3항)	
전북 완주군			임의규정
전북 진안군	미흡	미흡	
전북 무주군			임의규정
전북 임실군	미흡	미흡	

□ 현행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

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시간·예산지원액·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

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 삭 제 >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민간위탁사무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침결정문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최고의선언에
시원한공감까지

비상하는 김제

문서번호	행정지원과 13804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김제시청장 대행 부시장	결 재
보존기간	년	박현규	윤재승	강현우	유병진	代 이흥서	
결재일자	2026. 6. 1.						
공개여부							
		협조	예산팀장 代 최희경		기획감사실장 이영호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계획(안)



김 제 시
행 정 지 원 과